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. 4. 30 선고 2019가단161 판결 [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4. 16.

판결 선고 2019. 4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5,0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하정훈

별지